

제 1 장 학과 운영

제 1 조 (목적)

본 내규는 아동가족학과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절 교수회의 운영

제 2 조 (목적)

본 내규는 아동가족학과 교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의운영)

- ① 회의는 정기교수회의와 임시교수회의로 구분된다.
- ② 정기교수회의는 매주 1 회로 한다.
- ③ 임시교수회의는 각 교수의 건의나 시급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, 학과주임교수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- ④ 본 회의의 성립은 전공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- ⑤ 본 회의의 의결은 출석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4 조 (의결사항)

본 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학과 내규의 제정 및 개정
- ② 학과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
- ③ 학과의 실습실 및 기자재의 운영
- ④ 학과의 교육환경 개선
- ⑤ 학사운영의 일반적인 제반 사항
- ⑥ 학생 지도 및 상담에 대한 사항
- ⑦ 장학생 선발에 대한 사항
- ⑧ 학생의 권익에 대한 사항

이외의 교수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수회의를 통해서 의결한다.

제 2 절 학생 지도

제 5 조 (목적)

본 내규는 아동가족학과 학생지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6 조 (학생지도)

- ① 신입생 지도 및 상담은 학과지도교수가 실시한다.
- ② 학생지도 및 상담은 학년별 담당교수가 실시하며, 학생상담기록카드를 자료로 활용한다. 이외에도 학생은 면담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교수와 면담할 수 있다.
- ③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교수회의 시 사안을 건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.

제 7 조 (간담회)

- ① 학생회 임원, 학년 대표 등과의 간담회는 매학기마다 실시한다.
- ② 학생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시 학과주임교수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3 절 장 학 제 도

제 8 조 (목적)

본 내규는 아동가족학과의 장학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9 조 (장학생의 자격)

장학생 선발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요 건
성적우수장학금	① 매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에 한함. 해당학기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부여 ② 학과성적과 전공이수 과목 수를 반영(1학년은 전공교양 포함하여 3과목 이상, 2학년은 2과목 이상, 3,4학년은 3과목이상) ③ 장학금액은 전체 수혜액을 기준으로 성적 순위에 따라 차등 부여
우정장학금	국민생활기초법 대상가족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
모범장학금	① 학생회장, 전공대표 등 학과기여도가 높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② 해당학기 평균평점 2.5이상
기타 대외장학금	각 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 10 조 (장학생 자격의 상실)

- 1) 장학금 수혜학기 휴학생, 제적생 등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2) 학과의 각종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장학금 수혜자는 전과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전체(성적우수 및 모범장학)를 환수조치 한다. 단 우정 및 국가장학금은 제외한다.

제 11 조 (장학생의 선발)

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학기 성적, 학과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 선발기준은 학과 성적 70%(전공이수 과목 수 반영), 영어성적 20%(단, 영어성적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영어성적 산출시기 기준으로 동일 성적 1회 사용으로 제한한다. 토폴 또는 토익 성적 제출), 학과기여도 10%로 한다. 봄학기가 8학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학년 2등에 준하는 금액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.

제 12 조 (장학금의 배분)

장학금 배분은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 4 절 전 과

1. 전과의 허용범위

- 1) 본 학과 입학정원의 최대20%까지 허용 (8명)
- 2) 당해학기 신청자 중 20%가 초과한 경우, 성적 순으로 선정

2. 전과의 조건

- 1) 1학년 : 전공과목 3과목 이수 (전공필수 2과목, 전공선택 1과목)
- 2) 2학년 : 전공과목 7과목 이수 (전공필수 3과목, 전공선택 4과목)